

3) 공동경작동맹과 연대의 확보

농민회가 늘 신경써야 했던 부분은 농민들 내부의 연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농민은 노동자와 달리 각자 토지를 점유하고 자기의 손익계산에 따라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어려웠고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들은 저항하는 소작인을 축출하고 새로이 소작인을 불러들임으로써 소작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주·소작분쟁을 소작인 사이의 분쟁으로 바꾸는 전술을 취하였다. 공동경작동맹은 이러한 지주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농민들의 전술이었다.

1923년 모내기철부터 시행된 공동경작동맹은 지주에게 부당하게 축출된 소작인이 토지를 힘으로 점유하고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과 농민회원들이 힘을 합쳐 돕는 것을 뜻하였다. 평소 농민들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 품앗이를 했지만 공동경작동맹은 통상적인 품앗이보다는 큰 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였다. 때로 농민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대립하는 것을 꺼리기도 했으므로 마을을 바꿔 동원되기도 했다.¹⁾

공동경작을 하다 보면 신소작인 쪽과 신체적인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기수는 공동경작을 지휘하던 중 신소작인 쪽의 인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²⁾ 당국은 공동경작동맹에 관여한 인물들을 폭행이나 상해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다. 탈작된 농민의 자리에 들어온 신소작인에게 집단적인 압력을 넣어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었다. 그러한 소작인들과 교류를 단절하고 노동력의 교환을 금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이를 “수화(水火)를 불통(不通)”한다고 표현하였다.³⁾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러한 사람들의 등에 북을 지우고 마을을 돌아 망신을 주기도 했다.

집단적으로 행진하면서 지주와 마름을 성토했다는 것 역시 그들에 대한 공격임과 동시에 농민들 내부의 단결을 고양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여기에는 성토의 구호를 기재한 깃발을 들고 하는 입기성토(立旗聲討), 대자보를 써붙이거나 허수아비를 세우고 이에 공격대상의 이름을 기재하여 하는 성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⁴⁾

1) 『동아일보』 1923. 6. 2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1924년 刑公 第689號.

3) 『동아일보』 1924. 5. 16.

4) 『동아일보』 1924. 2. 27 · 1924. 3. 8 · 1924. 4. 17.